

의안번호	2221257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3.
추 계 번호	26B4653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2제2항 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)	정부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.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·융복합의 실태조사, 연구, 개발, <u>실증사업</u> 및 보급·확산 ※ 현행법상 “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 업무”의 범위에 실증사업 포함	재량규정
	안 제36조의2제4항 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, 농업경영의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·컨설팅, 기술·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6조의2제2항 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36조의2제4항 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)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·컨설팅, 기술·서비스의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 - 개정안에 따라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증사업을 신규 추진하고,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·컨설팅 및 기술·서비스 보급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실증사업의 신규 추진이나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실제 재정소요는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, 사업규모 및 추진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, 현시점에서는 개정안 자체만으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현행법에 따른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‘26년 예산(백만원)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	일반농산어촌	농촌형 생활 SOC 등	505,167
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	농촌	체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등	2,700
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	농촌	수거지원반 활동지원	6,848
농촌소멸대응빈집재생사업	행정리	빈집리모델링	825
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	행정리	주거환경 개선	120,473
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	농촌	공공임대주택 등	33,400
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사업	농촌	빈집 거래 활성화	1,030
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	농촌	취약계층 집수리 지원	3,466
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	농촌	빈집 철거 지원	10,500
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	농촌·준농촌	건강 및 연금 보험료 지원	341,351
농촌돌봄활동지원	농촌	영유아 돌봄 지원 등	7,077
농촌왕진버스	농촌	의료보건서비스 지원 등	4,670
농촌공간정비사업	농촌	농촌 유해시설 정비 등	151,861
농촌형교통모델	군 지역	교통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지원	28,991
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	농촌	농촌유희시설 리모델링 등	2,270